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3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5년 12월 17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운영의 상호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이사장의 직무 대행 순서에 대표이사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,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“대표이사” 를 삭제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9조제3항 중 “대표이사,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록순” 을
“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” 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이사회)</p> <p>③ 이사회장이 부득이 한 사 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 지 못하는 때에는 <u>정관에</u> <u>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</u> <u>재순</u>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.</p>	<p>제9조(이사회)</p> <p>③ 이사회장이 부득이 한 사 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 지 못하는 때에는 <u>대표이</u> <u>사, 정관에서 정한 당연</u> <u>직 이사 기록순</u>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9조(이사회)</p> <p>③ 이사회장이 부득이 한 사 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 지 못하는 때에는 <u>정관에</u> <u>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</u> <u>재 순</u>으로 그 직무를 대 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민법」”을 “「민법」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
2. 복지 분야의 평가·심사 및 인증
3.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
4.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·보급
5. 사회서비스 품질관리
6.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
7. 국내·외 복지 분야 연계·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
8.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
9. 복지관련 자료 개발·관리 및 보급
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
11.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6조 중 “「민법」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”으로 하고 “기재하여야”를 “적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의 “변경하고자 하는”을 “변경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 하되,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각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.

④ 임원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.”를 “총괄한다.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통할한다.”를 “총괄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“기재순”을 “기재 순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“임면한다.”를 “임명 또는 해임한다.”로 한다.

제12조의2제1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의한다.”를 “따른다.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년도 개시”를 “연도 시작”으로 하고, “언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하며, “변경하고자 할”을 “변경하려는”으로 한다.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업연도 종료”를 “사업연도가 끝난”으로 하고 제1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범위)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「민법」 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재단의 사업) ①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미련 및 교부액의 심사 2.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평가 3.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지원 4. 복지시설 회계절차 개선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개발·보급 5. 복지프로그램 개발·보급 6. 복지시설간 연계·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7. 복지시설 종사자교육 8. 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상담·자문서비스 9.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및 관련시설 운영 10.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 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12.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<p>② 제1항에서 “복지시설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,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.</p>	<p>제4조(재단의 사업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 2. 복지 분야의 평가·심사 및 인증 3.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.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·보급 5.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6.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7. 국내·외 복지 분야 연계·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8.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9. 복지관련 자료 개발·관리 및 보급 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11.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<p>② (삭제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「민법」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정관) ① ----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제1호부터제13호까지의 사항 -----적어야 -----.</p>
<p>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</p>	<p>② ----- 변경하려는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변경하려는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임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면하고,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면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7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각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임원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임원의 직무)</p> <p>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, 그 업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임원의 직무)</p> <p>① ----- 총괄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이사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의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9조(이사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총괄한다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기재 순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.</p>	<p>제10조(직원) ----- 따라 ----- 임명 또는 해임한다.</p>
<p>제12조의2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제14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</p> <p>제15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수입·세출에 관한 예산·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·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. (생략)</p> <p>제17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의2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----- ----- 따른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따라 ----- -----.</p> <p>제14조(사업연도) ----- ----- 따른다.</p> <p>제15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----- 연도 시작 ----- 받아야 ----- 변경하려는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사업연도가 끝난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따른 -----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공무원의 파견) ----- ----- 따라 ----- -----.</p>